

(무)

(서산군 통지용)

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

발행번호	제	호	회계년도		세입과목	
납부의무자	성명		주소			
과태료금액		원	납부기간		까지	납부장소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은행 :						
수납날짜도장			서산군수 귀하			

168mm×118mm
[인쇄용지(복합) 34g/㎡]

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제1항중 “금액의 1.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”를 “금액의 100퍼센트로 하며”로 한다.

제29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교육연구시설(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제외한다)

제37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- 2.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에 한한다)

제38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)
- 11. 종교시설

제39조중 제3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)

10. 자동차 관련시설(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)

제40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)

제67조 제4조 [서식] 용도, 지역구분, 띄어야할 거리, 적용대상 건축선의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및 노유자시설의 적용대상 건축선중 “출입구가 있는 모든 건축선”을 “모든 건축선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것으로 본다.